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시 정 요 구

제 목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소홀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남구, 북구, 광산구

내 용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도(農道) 등 농로 포함 ),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로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 기반 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농업용수는 준공신고 후 3년 주기로 1회 수질검사)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으

로부터 수질검사<sup>1)</sup>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하여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점검을 실시하고,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농업용수로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남구, 북구, 광산구 등 3개 구에서는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 대형관정 총 170개 중 24개 관정(14.1%)이 아래 [표1]과 같이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표1]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 미실시 관정 현황(2017.8월)

시·군	보유 관정수	정기 수질검사 현황 (2014.1월~2017. 9월까지)			최근 점검연도별 정기검사 미실시 관정수	비고
		실시	기간미도래 및 폐공예정	미실시		
합계	170	142	4	24		14.1% (정기검사 미실시율)
동구	3	3	-	-	-	
서구	18	18	-	-	-	
남구	50	32	-	18	(2010년) 9, (2011년) 4 (2013년) 2, (2014년) 3	
북구	46	40	-	6	(2010년) 1, (2011년) 3 (2012년) 1, (2013년) 1	
광산구	53	49	4	-	-	기간미도래(2) 및 폐공예정(2)

1) 검사전문기관 수질검사 항목(14개) : 수소이온농도(6.0~8.5), 질산성 질소(20mg/L이하), 염소이온(250mg/L이하), 카드뮴(0.01mg/L이하), 비소(0.05mg/L이하), 시안(0.01mg/L이하), 수은(0.001mg/L이하), 페놀(0.005mg/L이하), 납(0.1mg/L이하), 6가크롬(0.05mg/L이하), 유기인(0.0005mg/L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0.03mg/L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0.01mg/L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0.3mg/L이하)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

또한 각 자치구별 자료를 재확인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수원고갈, 수혜면적 소멸, 농경지 타목적으로 전용, 고장으로 시설보수 실익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용불가 판정을 받은 관정(3개)에 대해 현재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2] 농업용 대형관정 사용불가 현황

시·군	보유 관정수	현지확인 결과			준공년도별 사용불가 현황	비고
		부적합 관정수	사용불가 관정수	소계		
합계	99	0	3	3		
북구	46		1	1	(1994년) 1	수원고갈, 건물신축 예정
광산구	53		2	2	(1983년) 1 (2001년) 1	수혜면적 소멸, 카센터 등 부지로 사용 중, 시설보수 실익이 없어 관리자 폐공요청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북구청장, 광산구청장은

[시정] 정기 수질검사 기간이 경과한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수질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사용불가 판정을 받은 관정은 폐공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